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요금 선수금의 사용 용도를 전력망 확충 등으로 제한〉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72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의원 등 22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30.
3. 회부연월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전·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선수금을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¹⁾

본 법률안은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3)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연계 법률안임.

해당 연계 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기본공급약관의 기재사항에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을 추가하는 내용임.²⁾

1)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한국전력공사법」 제1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填)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②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변전·배전 설비를 옥내화·지하화·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계 법률안(의안번호 2218773)이 반영된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음.

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이익금의 처리) ①·② (생략) <u><신설></u>	제14조(이익금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u> <u>사업의 선수금은 해당 사업에</u> <u>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u> <u>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u> <u>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u> <u>한다.</u>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제2조(선수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선수금부터 적용함

제안이유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여덟 개 호로 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2호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임.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 제78조에 선수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고 선납 기간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지급

하고 있음.³⁾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선수금 제도의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 선수금 제도 운영 실적]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고객 호수(호)	6,392	4,160	3,974
선수금 입금액	343,559	273,290	393,347
지급 이자	876	990	1,11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 호수는 2023년 6,392호에서 2025년 3,974호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 입금액은 3,435억원에서 3,93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개정안은 이와 같이 조성되는 선수금의 용도를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조성된 재원이 전력망 확충 등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용도 제한이 미치는 실제 범위, 조문의 위치 및 현행 제14조와의 관계, 용도 준수 여부의 확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용도 제한이 미치는 실제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78조(선수금) ① 한전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선수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2. 선납기간이 3개월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안 제14조제3항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선수금을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13조제1항제2호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이 허용하는 용도인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는 구조임.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자금 용도가 대부분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령에 명시하는 실익이 크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영업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선수금을 미이행 부채로 표현하면서, 개별 기업의 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음.

한편 개정안은 전력망 확충 사업 등 구체적인 용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임되는 내용에 따라 용도 제한이 실제로 미치는 범위가

4)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달라질 여지도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조문의 위치 및 현행 제14조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선수금의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목을 “이익금의 처리”로 하는 현행 제14조에 제3항으로 신설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14조제1항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의 처리 순서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유 부동산 활용사업의 수익금을 송전·변전·배전 설비를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⁵⁾

아울러 제14조제2항이 규정하는 대상은 사업의 수익금인 반면 개정안이 규정하는 대상은 장래의 전기공급에 대응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이 서로 구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한국전력공사법」 제1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填)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②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변전·배전 설비를 옥내화·지하화·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37